

(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-참조2)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7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2. 12.

발 의 자 : 최만식의원 외 10명

1. 제안이유

시의회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시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,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본회의 장에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또한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,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3).

나. 표결할 때에나,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8조 1항, 제44조).

다.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(안 제42조의2).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일부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 3(의장의 당적보유금지)

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.

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.

제38조①항 및 제44조중 “선포”를 각각 “의장석에서 선포”로 한다.

제4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 2(자유투표)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) 제9조의3의 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. 이 경우 “당선된 다음 날”은 “이 조례 시행일 다음 날”로 본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.</u>	<u>제9조의3(의장의 당적보유금지)</u> <u>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.</u> <u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.</u>
제38조(표결의 선포)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<u>선포</u> 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38조(표결의 선포) ①----- ----- -----<u>의장석에서 선포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.</u>	<u>제42조의2(자유투표)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44조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<u>선포</u> 한다.	제44조(표결결과 선포) ----- ----- <u>의장석에서 선포</u> ---